



# 성동구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 
(안)

---

아래의 고시공고를 [시군구보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5 - 160호

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2월 17일

성 동 구 청 장

##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성동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목적(안 제1조)

- 성동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

#### 나.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3조)

- 지원물량,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, 지원신청 및 절차 정보제공 등

#### 다. 지원대상(안 제4조)

- 관련법규에 의거 사용승인된 단독, 공동주택, 노유자 및 연구시설 등

#### 라. 지원내용(안 제5조)

- 수목전지, 식재 및 고사목 처리 및 병해충방제, 자문 및 지도 등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참조: 공원녹지과, 전화 02-2286-5661, FAX: 2286-5931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,반여부와 사유)
- 나. 성명(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붙임 1.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. 끝.

★주무관

**김진찬**

조경팀장

**정종열**

공원녹지과장

**권세동**

도시관리국장

전결 02/13  
**윤호중**

협조자

시행 **공원녹지과-1727** ( ) 접수 ( )

우 133-70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/ http://www.sd.go.kr  
전화 02-2286-5661 /전송 02-2286-5931 / daichage@sd.go.kr / 대시민공개